

여명급부특약 약관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6조 보험금 등의 청구

제7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제8조 적용대상

제9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0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11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절차

제12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제4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5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4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6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 회사의 보장개시

제16조 특약의 보험료

제17조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7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18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제8관 기타사항 등

제19조 주계약에 정기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제20조 정기보험에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제21조 유니버설보험에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제22조 더블업헬스케어보장보험에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제23조 소득보장보험에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제24조 변액평생보장보험 소득보장형에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제25조 다른 특약의 취급

제26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여명급부특약 약관

※ 이 특약의 약관 본문 내에서 참조하는 모든 법령은 별첨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라.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 원, 연간 10%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 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 년차 이자 = 100 원(원금) X 10%=10 원
- 2 년차 이자 = (100 원(원금) + 10 원(1 년차 이자)) X 10%=11 원
- 2 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 원+11 원=21 원

- 나.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다. 여명급부금: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50% 또는 80%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지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3 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여명급부금은 2,000 만원까지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100%로 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다. 전환나이 계약해당일: 전환나이가 되는 해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전환나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의료법 제 3 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하 “여명”이라 합니다)이 6 개월 이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여명급부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여명급부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여명급부금과 같은 금액의 주계약 보험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단, 그 감액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여명급부금 지급일 이후 주계약 약관에 정하는 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약에 따라 지급된 여명급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여명급부금이 지급되기 전에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여명급부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여명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아 그 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여명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여명급부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명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⑤ 여명급부금 지급시 보험계약역모기지특약의 역모기지지원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여명급부금에서 역모기지지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역모기지특약의 역모기지지급은 종료되며 더 이상 역모기지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⑥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제 9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에서 정하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명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 등의 청구]

- ① 피보험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의사의 진단서
 3. 피보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피보험자가 아닌 자(지정대리청구인 제외)가 청구할 경우)
 5. 기타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 1 항 제 2 호의 진단서는 의료법 제 3 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 6 조 [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일 예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24 년 10 월 8 일(화)인 경우 10/9(수, 한글날), 10/12(토), 10/13(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10/8(화)부터 3 영업일인 10/14(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1〉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로부터의 사실 조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3 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제8조 [적용대상]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9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기명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명으로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된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0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제12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단, 제1항에 따른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은 피보험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 제 1호 및 제 2호에도 불구하고 비혼, 독신의 사유로 배우자 혹은 3촌 이내의 친족으로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이 불가능하여 회사가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자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계약자로부터 확인한 후 계약자와 회사 간의 개별약정에 따라 지정된 자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예시】

- 기명 지정대리청구인
계약자가 기명하여 지정 : (예시) "김 00"
-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
계약자가 특정인을 기명하지 않고 지명 : (예시)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 판단 예시】

- 보험 가입 당시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을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당시 해당 서류상 배우자 A)로 지정한 후에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대리청구하는 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가 B 인 경우
→ 해당 시점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12 조 제 1 항 제 4 호로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 B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최초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신청서(회사양식)
 2.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계약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계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을 무기명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8조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계약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계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을 무기명으로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③ 지정대리청구인의 사망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보며, 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2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8조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지정대리청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 에 따라 지정된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2인 이상의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한 명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제 1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9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 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였으나 보험금 청구 시점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가 아닐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명 등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는 서류)
 - 3.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계약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4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이 특약에 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주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5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4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단, 주계약에 부가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하 “사망보장특약”이라 합니다) 중 사망보장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사망보장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2.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제 6 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 [회사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 14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 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6조 [특약의 보험료]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17조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 15 조 [회사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7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1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8 관 기타사항 등

제19조 [주계약에 정기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 ① 주계약에 정기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액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액에 정기특약의 특약사망보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 ②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이 특약의 보험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 25 조 [다른 특약의 취급]에 관계없이 주계약 및 정기특약의 청구일 현재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정기특약에 대한 이 특약의 보험금은 정기특약의 특약보험기간 만료일의 12 개월 이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정기특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정기특약에 대해서는 제 3 항의 “특약보험기간 만료”를 “자동갱신기간 만료”로 바꾸어 읽습니다.
 - ⑤ 제 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본 조의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제20조 [정기보험에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 ① 이 특약이 정기보험에 부가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은 정기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12 개월 이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정기보험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보험기간 만료”를 “자동갱신기간 만료”로 바꾸어 읽습니다.

제21조 [유니버설보험에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이 특약이 유니버설보험에 부가된 경우, 유니버설보험계약의 예정해약환급금이 12 개월 경과후에도 ‘0’이 아닐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더블업헬스케어보장보험에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이 특약이 더블업헬스케어보장보험에 부가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은 더블업헬스케어보장보험의 전환나이 계약해당일의 직전 12 개월 동안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소득보장보험에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 ① 이 특약이 소득보장보험에 부가된 경우,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여명급부금액은 주계약의 기본보험금의 50% 또는 80%(보험가입금액의 25% 또는 40%)로 하며, 월급여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소득보장보험에 대한 이 특약의 보험금은 소득보장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12 개월 이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변액평생보장보험 소득보장형에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이 특약이 변액평생보장보험 소득보장형에 부가된 경우, 은퇴나이 전 보험기간에는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여명급부금액은 주계약의 기본보험금의 50% 또는 80%(보험가입금액의 25% 또는 40%)와 제 19 조 [주계약에 정기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에 의한 특약사망보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주계약의 월급여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다른 특약의 취급]

- ① 주계약의 보험금 전부가 지급된 경우 주계약은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주계약에 다른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금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각 특약은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6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7조 제2항 관련)

구분	기간	지급이자
여명급부금 (제 3 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 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 일 이후부터 60 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 일 이후부터 90 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 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주계약 약관 참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주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 4)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회사 홈페이지(www.kb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